



대학안전관리계획(2026년)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2026. 0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7
1. 재난	7
① 자연재난	7
② 사회재난	13
2. 안전사고	15
① 대학 안전사고	15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3
③ 연구실사고	25
3. 감염병 확산	28
① 감염병관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28
4. 범죄	34
① 일반범죄	34
② 성범죄	39
5. 산업재해	45
① 산업재해	45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47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1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60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65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67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68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 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법률>

구분	주요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 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한양대학교 ERICA		설립구분	사립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 화	031-400-0119	FAX	031-400-5185	홈페이지	www.hanyang.ac.kr
총 장	이기정	총괄안전 관리책임자	백동현(직책 : ERICA 부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10,412	1,938	12,350	24년 통계연보 기준

교직원 (명)	직원	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경비인력)	합계
	320	1,467	56	40	1,883

□ 학교위치 및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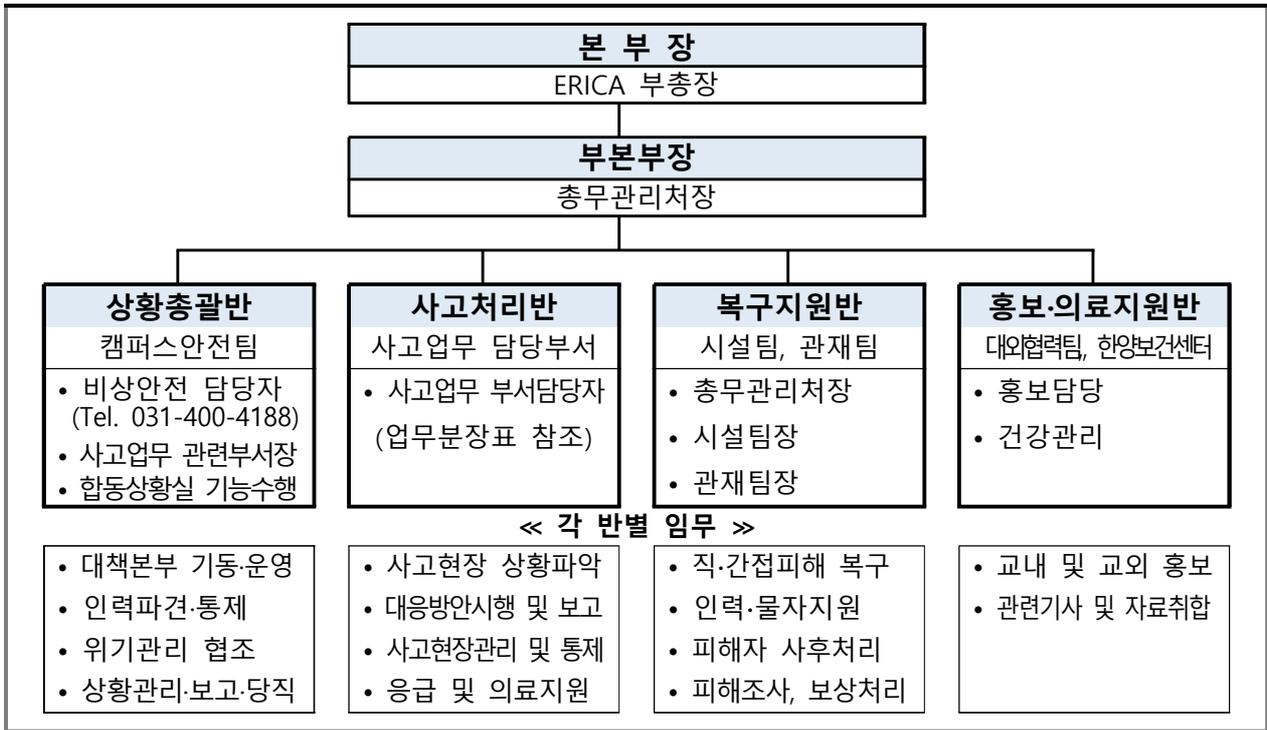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총무관리처 캠퍼스안전팀	관계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총무관리처 관재팀	관계부서
	사회재난	총무관리처 캠퍼스안전팀	관계부서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관계부서
	연구실 사고	총무관리처 캠퍼스안전팀	관계부서
	교육시설안전	총무관리처 시설팀	관계부서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인재개발처 한양보건센터	관계부서
4. 범죄	성범죄	학생인재개발처 인권센터	관계부서
	일반범죄	총무관리처 관재팀	관계부서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관리처 캠퍼스안전팀	관계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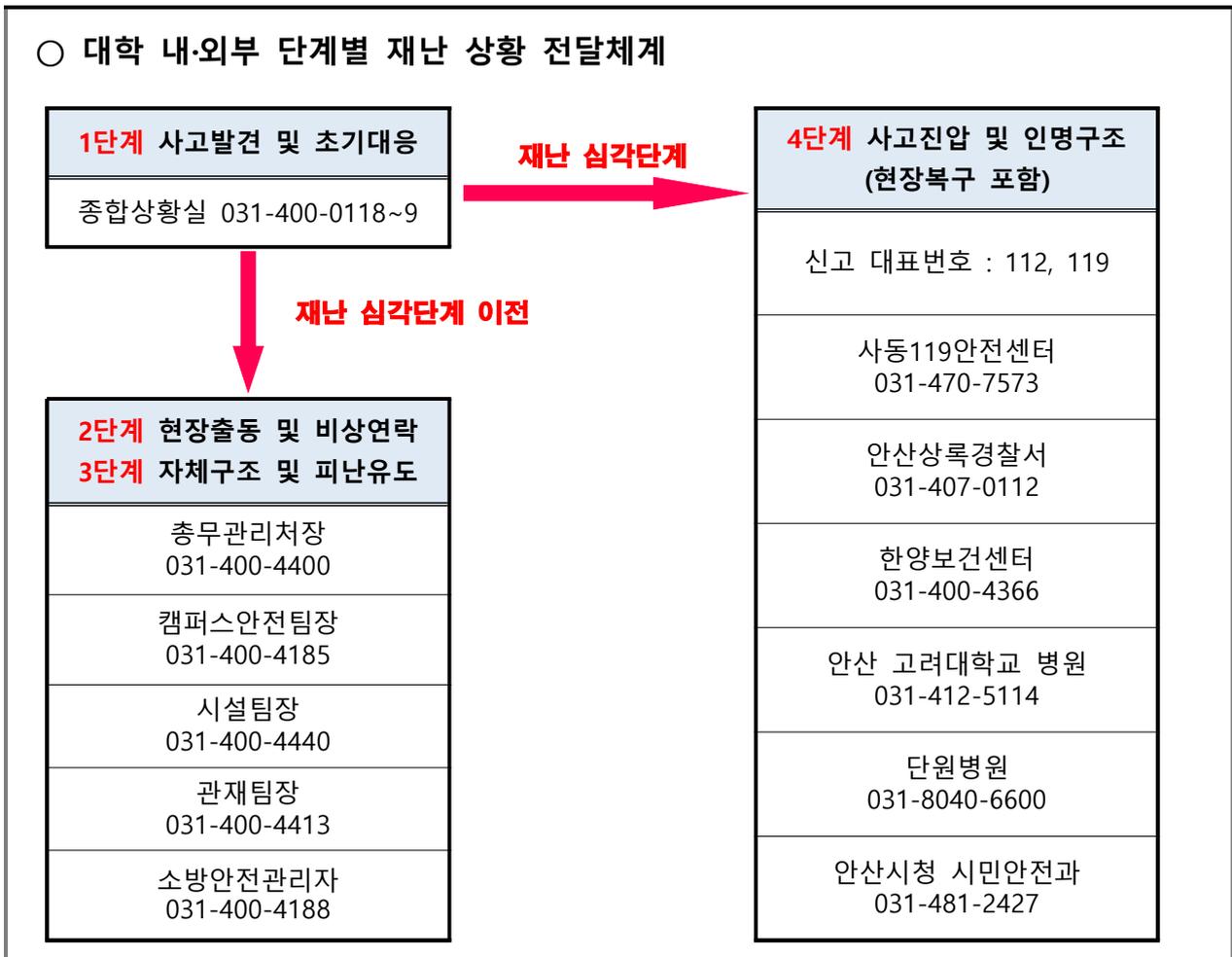
□ 비상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총장실	총장	이기정	02-2220-0030
부총장실	부총장	백동현	031-400-4001
총무관리처	처장	윤영학	031-400-4400
캠퍼스안전팀	팀장	이종우	031-400-4185
관재팀	팀장	이승화	031-400-4413
시설팀	팀장	박지정	031-400-4440
종합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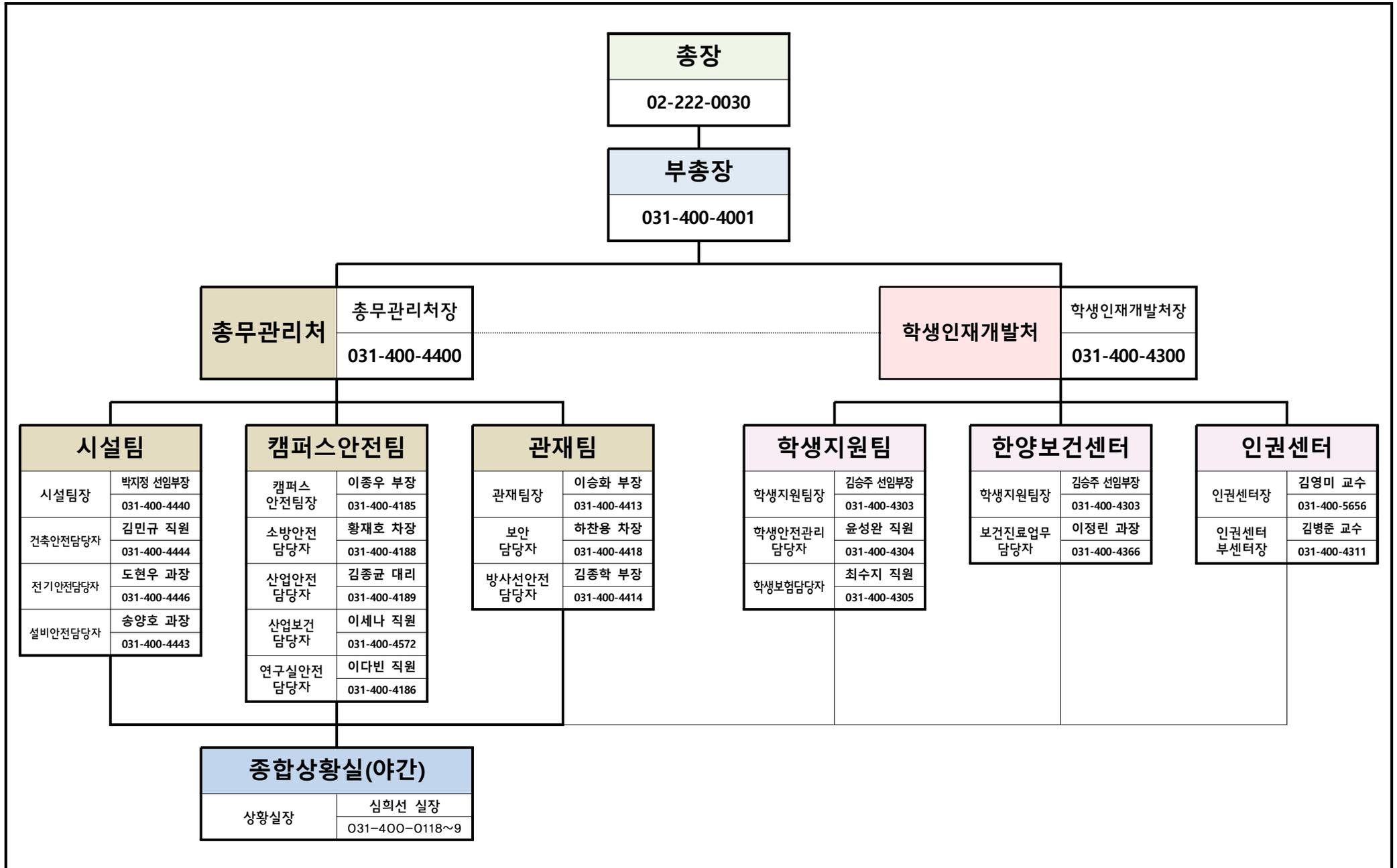
□ 캠퍼스 재난안전관리체계



□ 캠퍼스 단계별 비상연락체계



□ 캠퍼스 보고체계 및 인력현황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3, funnyuni@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관재팀	차장	하찬용	031-400-4416, chun830@hanyang.ac.kr	
팀장	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협조부서
팀원	상황실	부실장	서상근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의 환경으로 인해 각 계절 별 기후현상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포항지진 등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되고 있고 기상 및 환경적 이변의 인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매학기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부서(연구실) 포상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 유형별 학생회 예방 활동 운영, 공모전 등 홍보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 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관리

○ 재난단계 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제설작업 등 지원비용	12	12	12	36	
계	12	12	12	36	

②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팀장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j603@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1	0	1	1	0.8
재산피해(백만원)	0.2	0	0	0.2	0	0.08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소방용품 구입	8.8	8.8	8.8	26.4	
안전시설 개선비용	40	40	40	120	
안전시설 점검비용	42	42	72	126	
재산종합보험 가입	35	62	62	132	
계	125.8	152.8	182.8	404.4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부장	김승주	031-400-4303, kimsj@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윤성완	031-400-4304, successful@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0	9	13	18	15	13.00
재산피해(백만원)	2	7	32	20	14	15.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0	9	13	17	15
	계	10	9	13	17	15

□ 원인분석

- 자체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디디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안전

- 행사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과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시설,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 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수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등록금 학생지원 사업	20	20	20	60	
계	20	20	20	6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573, yhyh2020@hanyang.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	1	-	-	0.4
재산피해(백만원)	1.7	-	20.5	-	-	4.4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1	-	1	-	0.4
	계	1	-	1	-	0.4

□ 원인분석

○ 자체 조사결과

-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6	2026	합계	
교내 각 동 안전진단비	50	50	50	150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20	20	20	60	
계	70	70	70	210	

③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다빈	031-400-4186, gas119@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팀장	시설팀	선임 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2	0	1	3	2	1.6
재산피해(백만원)	-	-	-	-	-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2	0	1	3	1.6
	계	2	0	1	3	1.6

□ 원인분석

○ 사고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연구 활동 별 적합보호구 미착용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기본적인 실험실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연구책임자의 지도감독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구분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연구활동 종사자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연구실안전교육수료 3) 개인보호구 착용 4) 단독실험 금지 5) 실험실안전수칙 준수 6) 비상시대응요령 숙지	1) 사고 발생 전파 2) 부상자 응급조치 3) 화재 시 소화기 사용 4) 안전한 장소로 대피 5) 연구실 정보 제공 등	1) 사고 상황 종료 시에 따라 복구 지원 2) 피해상황 파악 3) 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이행
연구 책임자	1) 일일 안전점검 확인 2) 환경개선조치 이행 3)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4) 실험활동 관리·감독 5)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실시	1) 사고 발생 전파 2) 부상자 응급조치 3) 화재 시 소화기 사용 4) 안전한 장소로 대피 5) 연구실 정보 제공 등 6) 사고상황 및 초기 대응, 피해정도 전달	1) 사고복구 방안 논의 및 이행 2) 사고경위서 작성 제출 3) 사고자 면담 실시 4)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5) 특별안전교육 실시
단과대학	1) 비상연락체계 유지 2) 연구실안전 홍보 및 통제 3) 단과대학 안전예산 확보 및 집행관리 4) 캠퍼스안전팀 업무지원 및 협조	1) 현장집결 및 전반적인 사고내용·피해상황파악 2) 대피안내 및 사고구역 설정, 출입통제 3) 사고확산 방지 및 초기대응 실시 4) 사고자 구호조치 5) 기타 사고확대방지 조치	1) 사고자 인원파악 2) 사고복구 지원 3) 피해자산 파악 4)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및 이행
캠퍼스 안전팀	1)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2)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3) 건강검진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4) 상해보험대책 수립 및 계약관리 5) 연구실 환경에 대한 기술 조언 6) 소관부처 법령보고 7) 연구실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1) 현장 집결 및 통제 2) 대피안내 및 사고구역 설정, 출입통제 3) 비상방송 통한 사고전파 4) 중대사고 시 119안전센터 및 유관기관 통보 5) 사고확산 방지 및 초기대응 실시 6) 전기 및 설비 공급차단 및 부상자 응급조치 7) 119안전센터 현장 진입로 확보 및 부상자 인계 9) 현장보존 및 사고관련 자료 확보 10) 사고현장 안전점검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	1) 사고조사표 작성 및 소관부처 제출 2) 사고복구방법 및 정보수집 3) 사고 사례 전파 4)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5) 피해내역 산출 및 보험처리 6) 사고상황 해제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확인 7) 전기 및 설비 등 점검 후 공급요청 8) 소관부처 후속조치 결과보고 9) 필요 시 징계 건의 및 연구실 사용제한

- (재발방지대책) 연구실 사고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종 및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등록금 연구실안전관리비	296	303	310	909	법정보고기준
계	296	303	310	909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이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 자료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밀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참고 자료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1.2	1.2	1.2	3.6	
계	1.2	1.2	1.2	3.6	

4. 범죄

①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3, funnyuni@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관재팀	차장	하찬용	031-400-4416, chun830@hanyang.ac.kr	
팀장	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sangwang0119@gmail.com	협조부서
팀원	상황실	부실장	서상근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피해자수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험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범죄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건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보안 등 안전용품	6.00	8.75	8.75	23.5	
계	6.00	8.75	8.75	23.5	

②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교수	김영미	031-400-5815, ymikum12@hanyang.ac.kr	주관부서
부센터장	인권센터	교수	김병준	031-400-4311, lawpencil@hanyang.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1) 권력관계에 기반 : 문제제기 힘들

-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건 양상이 복잡함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위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이며, 노동권과 교육권, 즉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동반됨
- 대학 내 사제 간, 선·후배 간, 동급생 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내 존재하는 위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2차 피해 발생

- 행위당사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학업과 진로에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학 전공 연구분야 내 대인관계가 매우 한정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학업과 진로(취업, 학위 취득, 연구활동)에서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학업 및 진로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즉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예 처음부터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사건발생 및 당사자 개인신상이 주변에 알려져 누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소문이 나고, 그 내용이 확산·전파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당사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 및 진로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되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주변인들이 사건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은폐·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호소 자체를 의심하며,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음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0	0	0	2	1	0.6
	성폭력	0	0	0	0	0	0
	계	0	0	0	2	2	0.8
피해자 수	성희롱	0	0	0	20	2	4.4
	성폭력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해결 목적

-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가해행위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은 대학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됨
- 구성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학은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함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사건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를 일차적으로 해야 함
- 가해행위자에게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특히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권리 침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공동체 문화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학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함
- 우리 대학은 일관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센터를 설치하며 전담인력을 확보·운영하고 있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학 내 해결의 원칙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형사 절차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기관이 가지는 고유 목적을 고려해야 함

1)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돕고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교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함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불이익을 금지함

2) 비밀유지

- 사건처리 담당자, 조사·심의위원, 징계 업무담당자, 징계위원 등 해당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원 및 사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함

- 당사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련인들도 사건처리 절차과정 중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3) 신속성, 공정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신속히 실행함
- 교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함
- 규정과 시행세칙이 정한 진술의 기회와 자료 제출 기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공정하게 진행함
- 조사, 심의 및 징계 등의 과정에서 사건처리 당사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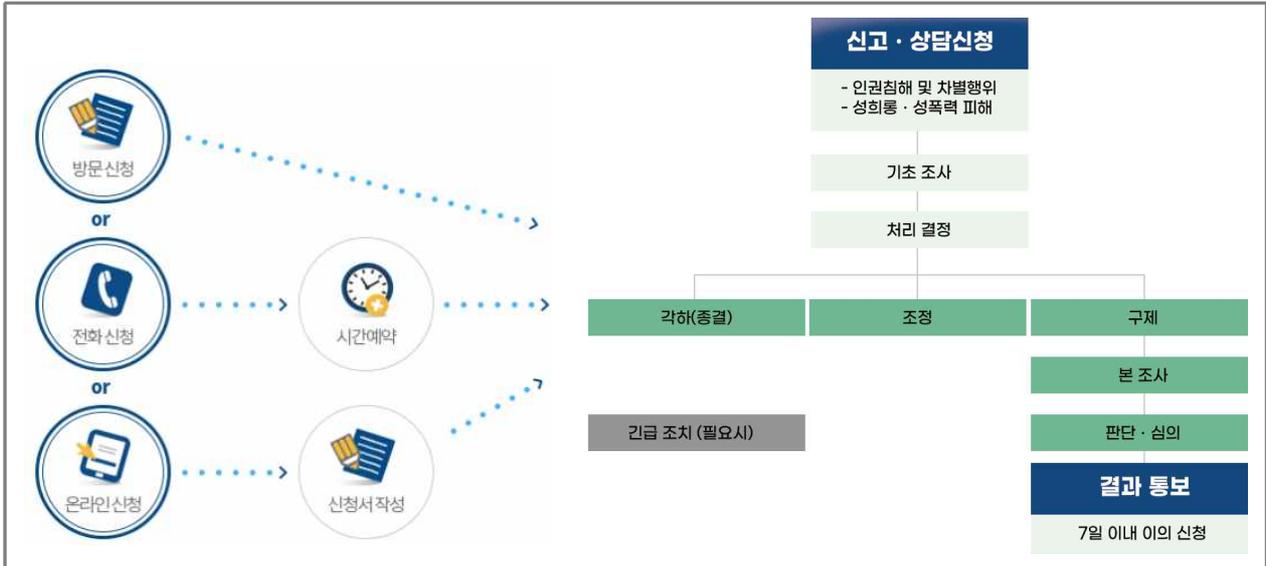
4) 가해행위자 책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가해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및 책임을 결정할 때는 징계 등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의 내용에는 재발방지 및 공동체 문화개선을 실천하도록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징계만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 오히려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내에서 사건처리 결과로써 반드시 가해행위자가 올바른 성인식 및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조치하도록 함
- 재발방지 조치는 가해행위자 본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될 수 있음

5) 공동체 문화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공동체 문화 점검을 위한 학내 실태조사 시행
- 사건이 발생한 학과나 단과대, 동아리 등의 공동체에 2차 피해 예방과 공동체 문화 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이나 개입 실시
- 사건이 종결되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 후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사후 조치 시행
-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

사건 처리 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46	5.78	4.67	14.91	24년부터 교육 시 자체 인력 활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리플릿 제작	2.0	2.0	2.0	6.0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6.0	10.0	10.0	26.0	
계	12.46	17.78	16.67	46.91	

5. 산업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관리감독자	총무인사팀	부장	임미경	031-400-4403, hoiri@hanyang.ac.kr	협조부서
관리감독자	장학복지회	차장	이은주	031-400-4325, dream11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j60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직원	성창모	031-400-4448, sung68@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주임	이형석	031-400-4447, leehsok@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차장	박기삼	031-400-4446, parkkisam@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직원	문상우	031-400-4450, neoble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8, cupi882@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대리	정재영	031-400-4415, a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주임	이덕중	031-400-4458, ldj72@hanyang.ac.kr	
관리감독자	약학대학행정팀	부장	이원걸	031-400-1002, ausding@hanyang.ac.kr	
관리감독자	정보인프라팀	차장	문제광	031-400-4485, munjk@hanyang.ac.kr	

□ 위험요인

관리부서(공정)	주요 유해위험 요인
총무인사팀	미니, 대형버스 등 차량 육안점검, 점프(시동)작업, 차고지관리
장학복지회	고온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세척작업, 화기취급작업
시설팀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도색작업, 건설자재 취급작업, 기계기구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용접 포함),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화학물질 취급, 고소작업
관재팀	보안경비, 조경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위험기계기구, 제설작업, 고소작업
정보인프라팀	대형UPS장비, 고압 배터리 점검, 서버·네트워크장비관리, 전화교환기점검
약학대학 행정팀	별목작업(별초), 수공구 작업(예초기, 톱, 낫)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2	0	3	1.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2	0	3	1.00
	계	0	0	2	0	3	1.00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오토바이 전도(2023.01.20.)
 - 원인 : 노면 블랙아이스로 인해 오토바이 운행중 미끄러짐
 - 피해 : 좌측 중족골 골절
 - 대책 : 근로자 안전교육, 도로 결빙 시 오토바이 운행 중지
-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2023.03.08.)
 - 원인 : 상용인부 인력감축으로 인한 조정작업 근로강도 증가 및 정신적 부담 추정
 - 피해 : 대뇌내출혈
 - 대책 : 사고사례 전파 및 인력충원 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안전관리사업	100.8	79.0	64.3	244.1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KB손해보험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대학안전사 고보상공제	2024-08-31 2025-08-30	1,140	17,585	20,047	15	14,074	-	-	2025년도 청구건수 기준
2026	대학안전사 고보상공제	2025-08-31 2026-08-30	1,140	17,585	20,047	-	-	-	-	2026 현재 청구건수 기준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2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후유장해	-	-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2,000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후유장해	-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재산종합 보험	2025-06-28 2026-06-27	23,162	294,231	71,483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유족급여	150,000	
장해급여	30,000	
치료비	6,000	자기부담금 없음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4-07-01 2025-06-30	5.2	7,628	39,033	5	353	-	-	이공계열 담보
2026	연구실 안전공제	2025-07-01 2026-06-30	4.8	8,208	39,452	1	-	-	-	치료완료 후 보험금 정산예정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500,000	500,000	
장해급여	500,000	500,000	
요양급여	2,000,000	2,000,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3일 초과 일로부터 30일 동안 보장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상담센터	교수	김영미	031-400-45815, ymikim12@hanyang.ac.kr	주관부서
부센터장	상담센터	교수	김경욱	031-400-4333, kaykim25@hanyang.ac.kr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프로그램(접수면접,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개인/집단상담) 운영 ▪ 심리지원 프로그램(마음특강, 힐링 프로그램, 솔리언 또래상담) 운영 ▪ 예방초점적 심리지원 사업(재학생/대학원생 마음건강검진, 마음건강캠페인, 마음토닥 카드뉴스 등) 운영

1. 대학 사회재난 대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실장	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협조부서
부실장	상황실	부실장	서상근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대상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및 교직원 등 교내구성원	2025. 03. 25.	18:30 - 19:00	942명	-
	2025. 09. 24.	18:00 - 19:30	574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소방자체훈련	▪ 대학 내 기숙사 구성원들의 화재상황 가정 하 대피 교육
기숙사 소방합동훈련	▪ 안산소방서, 대학구성원, 학교 통합상황실 연계 합동 소방훈련 실시 (단계 별 훈련상황 부여 및 훈련실시, 소화전 살수, 구조, 대피 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대상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및 교직원 등 교내구성원	3월 中(예정)	18:30 - 19:00	미정	-
	9월 中(예정)	18:30 - 19:00	미정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소방훈련 및 교육	▪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화재상황 대비 교육(소방서합동)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및 대피교육)
대학 캠퍼스 소화물품 체험교육	▪ 대학 내 화재 시 소화물품 이용 시 방법, 요령 등 교육 (소화기, 소화용구, 구급품, 비상벨 작동 등)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부장	김승주	031-400-4303, kimsj@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윤성완	031-400-4304, successful@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대상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확대간부수련회	2025. 2. 26.(수)	11:00 ~ 12:00	700	과학기술융합대/ 디자인대/예체능대
단과대 연합 오리엔테이션	2025. 3. 4.(화)	11:00 ~ 12:00	700	경상대/국제문화대/언론정보대
	2025. 3. 6.(목)	11:00 ~ 12:00	1,560	공학대/약학대 소프트웨어융합대
농촌봉사활동	2025. 6. 23.(월)	10:00 ~ 11:00	400	사회봉사학점 인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집단연수 시행 전, 사전 안전교육	▪ 안전교육 및 인권/폭력/성관련 예방 교육 실시 후, 집단연수 시행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대상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확대간부수련회	2026. 2. 2.(월)	10:30 ~ 12:00	230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연합 오리엔테이션	2026. 3. 2.(월)	11:00 ~ 12:00	120	LIONS 칼리지/첨단융합대/디자인 대/예체능대
	2026. 3. 5.(목)	11:00 ~ 12:00	500	글문통/커컬대/경상대
	2026. 3. 6.(금)	11:00 ~ 12:00	1,450	공학대/ 소프트웨어융합대/약학대
농촌봉사활동	6월 중순예정	10:00 ~ 11:00	400	사회봉사학점 인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집단연수 시행 전, 사전 안전교육	▪ 집단연수 시행 전,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인권/폭력/성관련 예방 교육 및 음주자제, 고압적 행위 금지 등)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관리감독자	총무인사팀	부장	임미경	031-400-4403, hoiri@hanyang.ac.kr	협조부서
관리감독자	장학복지회	차장	이은주	031-400-4325, dream11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j60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직원	성창모	031-400-4448, sung68@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주임	이형석	031-400-4447, leehsok@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차장	박기삼	031-400-4446, parkkisam@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직원	문상우	031-400-4450, neoble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8, cupi882@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대리	정재영	031-400-4415, a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주임	이덕중	031-400-4458, ldj72@hanyang.ac.kr	
관리감독자	약학대학행정팀	부장	이원걸	031-400-1002, ausding@hanyang.ac.kr	
관리감독자	정보인프라팀	부장	문제광	031-400-4485, munjk@hanyang.ac.kr	

□ 안전보건 교육 · 훈련

○ 추진결과 및 계획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대상인원	결과	대상인원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수료	-	-	
안전·보건관리자	1명	수료	1명	수료	'25년(보건관리자 보수) '26년(안전관리자 보수)
관리감독자	12명	수료	12명	수료	
근로자(정기)	58명	수료	56명	수료	
합계	70명	전원수료	69명	전원수료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사항 교육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작업공정이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교육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교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교육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교육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 ▪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다빈	031-400-4186, gas119@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팀장	시설팀	선임 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2025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	집체교육	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정기교육	온라인	2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2026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	집체교육	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정기교육	온라인	2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교수	김영미	031-400-5815, ymikim12@hanyang.ac.kr	주관부서
부센터장	인권센터	교수	김병준	031-400-4311, lawpencil@hanyang.ac.kr	

□ 2025년 교육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횟수	인원	예산(온라인)
학생	상시	온라인 연 1회 (의무)	전체 구성원	4,080,000원
교직원		대상별 연 1회 (수시)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온라인 필수 의무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신규 임용 교직원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신입생 꿈터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회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고위직 별도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찾아가는 부서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찾아가는 단대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2026년 교육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횟수	인원	예산(온라인)
학생	상시	온라인 연 1회 (의무)	전체 구성원	4,675,000원
교직원		대상별 연 1회 (수시)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온라인 필수 의무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신규 임용 교직원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신입생 꿈터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회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고위직 별도 대면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찾아가는 부서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찾아가는 단대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6.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부장	김승주	031-400-4303,kimsj@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한양보건센터)	과장	이정린	031-400-4366,lynnlee73@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573,bellkim@hanyang.ac.kr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약물 오남용과 위험성 이해	1	4	1000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교육훈련	▪ 약물의 정확한 사용법과 오남용 사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약물 오남용과 위험성 이해	1	4	1000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교육훈련	▪ 약물의 정확한 사용법과 오남용 사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중앙119구조본부	119	대표번호
사동119안전센터	031-470-7573	인명구조센터
안산상록경찰서	031-407-0112	경찰업무
안산시청	031-481-3247	에너지정책과
안산 한국전력	031-412-6393	안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032-345-0019	경인지사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031-412-5114	지역병원
단원병원	031-8040-6600	지역병원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중앙119구조본부	119	대표번호
사동119안전센터	031-470-7573	인명구조센터
안산상록경찰서	031-407-0112	경찰업무
안산시청	031-481-3247	에너지정책과
안산한국전력	031-412-6393	안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032-345-0019	경인지사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031-412-5114	지역병원
단원병원	031-8040-6600	지역병원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교육부	044-203-7146	
관할보건소	031-481-5715	
중앙119구조본부	119	대표번호
사동119안전센터	031-470-7573	인명구조센터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031-412-5114	지역병원
단원병원	031-8040-6600	지역병원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 범 죄

1) 평 시 유 관 기 관 네 트 워 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경찰, 구급	112, 119	대표번호
사동119안전센터	031-470-7573	인명구조센터
안산상록경찰서	031-407-0112	경찰업무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031-364-8117	성범죄관련 의료, 상담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031-412-5114	지역병원
단원병원	031-8040-6600	지역병원

2) 상 황 실 운 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 산 업 재 해 및 중 대 재 해

1) 평 시 유 관 기 관 네 트 워 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소방안전본부	031-230-6623	고객센터
중앙119구조본부	053-712-1194	상황관리팀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콜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고객센터
한국전력공사	123	고객센터
지역병원	031-412-538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지역보건소	1666-1234	상록수보건소

2) 상 황 실 운 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 기타(테러,비상사태 등)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예비군 해양동대	031-408-9113	군부대
예비군 사동대	031-407-5113	군부대
사동119안전센터	031-470-7573	인명구조센터
안산상록경찰서	031-407-0112	경찰업무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031-412-5114	지역병원
단원병원	031-8040-6600	지역병원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한양대학교 ERICA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교 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3, funnyuni@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관재팀	차장	하찬용	031-400-4416, chun830@hanyang.ac.kr	
		팀장	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협조부서
		팀원	상황실	부실장	서상근		
	② 사회재난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팀장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부장	김승주	031-400-4303, kimsj@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윤성완	031-400-4304, successful@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573, yhyh2020@hanyang.ac.kr	
	③ 연구실사고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p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다빈	031-400-4186, gas119@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팀장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협조부서
		팀장	시설팀	과장	송양호	031-400-4443, yhyh2020@hanyang.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등	팀장	학생지원팀	선임부장	김승주	031-400-4303, kimsj008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한양보건센터	과장	이정린	031-400-4366, lynnlee73@hanyang.ac.kr	
		팀장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3, funnyuni@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관재팀	주임	공병진	031-400-4419, gongsoda@hanyang.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3, funnyuni@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관재팀	차장	하찬용	031-400-4416, chun830@hanyang.ac.kr	
		팀장	상황실	실장	심희선	031-400-0119, sanghwang0119@gmail.com	협조부서
		팀원	상황실	부실장	서상근		
	② 성범죄	센터장	인권 센터	교수	김영미	031-400-5815, ymikim12@hanyang.ac.kr	주관부서
		-	인권 센터	교수	김병준	031-400-4311, lawpencil@hanyang.ac.kr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assion98@hanyang.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차장	황재호	031-400-4188, hjaeho@hanyang.ac.kr	
5. 산업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캠퍼스안전팀	부장	이종우	031-400-4185, assion98@hanyang.ac.kr	주관부서
		팀원	캠퍼스안전팀	대리	김종균	031-400-4187, bellkim@hanyang.ac.kr	
		팀원	캠퍼스안전팀	직원	이세나	031-400-4572, snlee@hanyang.ac.kr	
		관리감독자	총무인사팀	부장	임미경	031-400-4403, hoiri@hanyang.ac.kr	협조부서
		관리감독자	장학복지회	차장	이은주	031-400-4325, dream11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선임부장	박지정	031-400-4440, pj603@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주임	성창모	031-400-4448, sung68@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주임	이형석	031-400-4447, leehsok@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차장	박기삼	031-400-4446, parkkisam@hanyang.ac.kr	
		관리감독자	시설팀	주임	문상우	031-400-4450, neoble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부장	이승화	031-400-4418, cupi882@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대리	정재영	031-400-4415, as@hanyang.ac.kr	
		관리감독자	관재팀	주임	이덕중	031-400-4458, ldj72@hanyang.ac.kr	
		관리감독자	약학대학행정팀	부장	이원걸	031-400-1002, ausding@hanyang.ac.kr	
		관리감독자	정보인프라팀	부장	문제광	031-400-4485, munjk@hanyang.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1	1	0	1	1	0.8	
		재산피해(백만원)	0.2	0	0	0.2	0	0.08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10	9	13	18	15	13.00	
		재산피해(백만원)	2	7	32	20	14	15.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10	9	13	17	15	12.80
			계	10	9	13	17	15	12.8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1	0	1	0	0	0.4	
		재산피해(백만원)	1.7	0	20.5	0	0	4.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1	0	1	0	0	0.4
			계	1	0	1	0	0	0.4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2	0	1	3	2	1.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2	0	1	3	2	1.6
			계	2	0	1	3	2	1.6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발생건수	117	4,149	373	0	0	927.80	
		인명피해	사망	0	0	0	0	0	0
			계	117	4149	373	0	0	927.8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수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성범죄	발생건수	0	0	0	2	1	0.60	
		인명피해	성희롱	0	0	0	2	1	0.60
			성폭행	0	0	0	0	0	0
계	0	0	0	2	1	0.60			
5. 산업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2	0	3	1.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0
			부상	0	0	2	0	3	1.00
			계	0	0	2	0	3	1.0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제설작업 등 지원비용	12	12	12	36	
		계	12	12	12	36	
	② 사회재난	소방용품 구입	8.8	8.8	8.8	26.4	
		안전시설 개선비용	40	40	40	120	
		안전시설 점검비용	42	42	73	157	
재산종합보험 가입	35	62	62	132			
계	125.8	152.8	182.8	404.4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등록금 학생지원사업	20	20	20	60	
		계	20	20	20	60	
	② 교내 안전사고	교내 각 동 안전진단비	50	50	50	150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20	20	20	60	
		계	70	70	70	210	
	③ 연구실 안전사고	등록금 연구실안전관리비	296	303	310	909	법정보고기준
계	296	303	310	909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병예방관리사업	1.2	1.2	1.2	4.2	
		계	1.2	1.2	1.2	4.2	
4. 범죄	① 일반범죄	보안 등 안전용품	6.00	8.75	8.75	23.5	
		계	6.00	8.75	8.75	23.5	
	②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46	5.78	4.67	14.91	
		성희롱·성폭력 예방 리플릿 제작	2.0	2.0	2.0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6.0	10.0	10.0	26	
		계	12.46	17.78	16.67	46.91	
5. 산업재해	① 산업재해	안전관리사업	100.8	79.0	64.3	244.1	
		계	100.8	79.0	64.3	244.1	
총계			644.26	664.53	686.72	1,995.51	